

「 」

[2010.11.26] [22497 , 2010.11.19,]

() (02) 2023 - 7785
() 02 - 500 - 1650

1 () 「 」 .

2 () 「 」 (" ") 2 12 1 50

3 <2010.8.11>

4 (가) 15 1 , 가 , (" ")
() 가(" 가") .

1. 가 가
· · · 가 · · · (:
·) ·
2. 가
3. 「 」 29 가 가
57 (" ")가 가

4. 가 가
가 가 .
1. , , 가 , , · 가 ·

2. (異物)
3. 가

- 1.
- 2.
3. 가 가
4. , 가
(危害度)

3

가

가

4

가

1

5

가

,

,

5 (가)

15

4

"

"

15 2

6 ()

16

1

"

"

20

16

1

22

·

·

(

"

"

)

」 29

.< [2010.3.15](#)>

16

2

7 ()

17

1

2

"

"

1.

가

2.

가

3.

93

1

2

·가

17

5

"

"

17

3

17

6

.< [2010.3.15](#)>

3

8 ()

17

8

"

"

7

1

17

8

"

"

「

」

1

2

1

2

17 8 " " 「 」 6
가

.< 2010.10.1>

17 8 2 3
가 .

9 (가) 18 1 "

"

1. 10 (" ")

2. 18 가 10

3. 18 가 10

가

가

10 (가 가 .) 18 2

가 (" 가 ") 1 20

가

1. 「 」 2 1 2

2. (「 」 2 .)

3.

가

(互選)

2 1 2 2 . , (闕位)

가

, 가

가

1 6

가

가

11 (.) 21 4 "

" 21 1

12 (. .) 22 1 " "

13 () 22 2 (. . .)
(" . ") . . (. .)

1
1

14 () 23 1 " "
23 1 (. . .),

가 7

23 2 , . , .

1. 7 1 9 1
가

2. . , 7 1 9 1

, . . 3

7

, 23 4

18

3

.< [2010.3.15](#)>

15 () 26 " "

16 () 32 1 " "

32 1

(. . .), .

-
1. ,
 2. 「 」 2 1 4
 . 가 가

3. 2

4.1
 (), 2
 가
 2
 .

17 () 32 .

- 1.
2. .
- 3.
4. .
5. .
6. .
7. .
- 8.
9. .
- 10.
11. .

18 () 33 1 " "

33 1 (" ")

- 1.
2. 16 2
 33 2 4 " " 17
 8 .

33 4 (5),
(半期)

89 (" ")

33 6

33 7

.< 2010.3.15 >

19 () 34 1 " "

1. 21 1 .가

2. 21 3 가

34 1 1 2

16 2

1 가

3

34 1

2

1

1. 3

2. .

3. 10 13

4. 31 가 .

5. 36 .

6. 40 41 .

34 6 " "

1 4 ,

.< 2010.3.15 >

20 () 35 1 " "

1. 21 1 .가

2. 21 3 가

3. 21 5 6)

4. 21 8 47 1

35 3 " "

1 가 35 1 1

1

3 .< [2010.3.15](#)>

21 () 36 2 .< [2010.3.15](#)>

1. .가 : .가
 2. .가 : .가
 3. 가
 가. . . .가
 . .가
 . . (移行)
 .가
 4. : () . 가
 . 가 .가 .
 5. .
 가. : 가 .
- 1) :
 - 2) : . , 1
 - 3) : 가 .가
 .가 가 .

4) :

5) : , . 가

6) : 1) 5)

, ,

6.

가. : (業)

. • :

, .

7. •

가. • : 가 가

() •

. :

. • , ,

8.

가. : (茶類),

가

,

,

. :

. 가

. :

. 가

. :

.

가

. :

.

. :

, ,

.

가

22 () 21 8 " "

21 8

" "

23 (가 가) 37 1 가

가

1. 21 6 가 :

2. 21 8 : . •

24 (가) 37 1 가

26 () 37 4

1. ()

2.

3.

4.

5. 21 1 .가 가 가 (7 1)

.가

6. 21 2 .가 가 .가

.가

7. 21 3 가 가 가 가 (7 1)

8. 21 4 가 .

9. 21 5 2) 가 (「
」) . . (.)

27 () 41 1 " "

1. 21 1 .가

2. 21 2 .가

3. 21 3 가

4. 21 4

5. 21 5 . ()

6. 21 6

7. 21 7 .

8. 21 8

28 () 43 2 . . . (" . ")

1 8 .

29 () 44 1 "

"

1. 21 1 .가

2. 21 2 .가

3. 21 3 가

4. 21 4

5. 21 5 .

6. 21 6 가

7. 21 8

44 3 " " 21 8 .

30 () 44 5 1 " "

1. 24 2 1

2. 「 」

3. 「 」 2 1 2

4.

1 16 2

31 () 45 1

2

1. 45 1 (" ") 5 4

:

2. :

가. 3 1 (1)

1) 75 4 76 2 (") 가 2 6

2) . 3 2

. 4 1 3 1

1) 가 3 6

2) . 2 1

32 () 47 2 " "

33 () 48 10 " .
·가 "

1. 48 3
(") ·가
2. () ·가

48 11 " "

34 () 48 12

1. 「 」
2. 「 」
3. 가 (48
1)
4. 1
- 1.
- 2.
3. .
4. .
5. .
6. .
- 7.

35 (가) 50 1 " 48
"

1. 48
2. 21 1 ·가 500
3. 1 2 가

- 1. 「 」
- 2. 「 」
- 3. 가 가
- 4. 가

36 () 51
 . < [2010.3.15](#)>

- 1. 21 8
- 2. 가. 가

「 」 5 3 1

「 」
 1 가 가

- 1. .
- 2. 37 .

37 () 52 36
 1 2 가 .
 1 가

38 () 56 3

. <
[2010.3.15](#)>

1 ,
 . < [2010.3.15](#)>

39 () 58 2 1 2
 100 .

< 2010.3.15 >

1.

2.

3.

4. 59 64 (" ")

5.

3 3 1 가

, 3 1 가 . < 2010.3.15 >

40 () 39 3 2 5 2 ,

41 ()

, 3 1 가
. < 2010.3.15 >

(開議) ,

42 ()

43 ()

41 " " " "

44 () 58 1 20

. < 2010.3.15 >

45 () 1 ,

. < 2010.3.15 >

46 ()

. < 2010.3.15 >

. < 2010.3.15 >

47 ()

48 () 59 1 " " 21

59 1 (" ") ,
가

. < 2010.3.15 >

49 (가) 59 3 가 가

. < 2010.3.15 >

- 1.
- 2.
- 3.
- 4.
- 5.
- 6.
- 7.
- 8.

50 () 63 1

1

1

1. 36

2. , ,

3. 44 37 2 가

4.

51 () 73 1

「 」

9 1

1

. < 2010.1.27 >

1.

2.

3.

4.

5.

6.

7.

1

. < 2010.3.15 >

52 (가)

1. 75 가 ,

2. 76 .

3. 80

1

81

「 」 27

가

14

53 () 82 1

1

. < 2010.3.15 >

54 ()

, . . .

82

82

. < 2010.3.15 >

55 () 82 4

1

15

56 () 82 5 . . .

1. . : 100 40

2. . . : 100 60

57 () 83 1

가

1

, 가 가 가

83 1

54 56

58 () 84

, . .
「

」 9 1

. <

[2010.1.27>](#)

1. 「 」

2.

3. ,

4. (.가 , , .)

5. ()

6. ,

7.

59 () 86 1

86 2

1. . 가

2. 가

86 2

1. ,

(疫學的)

2. .

(理化學的)

3.

60 (.) 87 1 ("

") . < [2010.3.15>](#)

1. , , , , [

(檢事) (將官)]

2.

3.

가

가

61 () 89 3 8

1.

2.

3.

4.

5.

6.

7. 가

8.

9. 18 5

10. 31 2 가

11. 47 2

12. 48 11

13. 63 1

14. 「 」 22 6

15. 「 」 6 2

16. 「 」 7 3

17. 「 」 21 4

62 2

< 2010.3.15 >

62 ()

1 6

63 () 90 1

< 2010.8.11 >

1. 93 : 1
2. 4 6 (88) , 8 (88) 37 1 : 30
3. 7 4 (88) , 9 4 (88) , 19 1 , 44 1 • 2 75 1 : 20
4. 13 , 37 4 , 42 1 76 1 : 10
5. 40 3 88 1 : 5
6. 1 5 가 :
- 3
- 1 , ,

64 () , • • 90 1

65 ()

91

1. 19

, (가
·가 ·

)

2. 24 2 2

3. 27

, (2
)

4. 37 가 가

5. 39

6. 45

7. 48 3 4

8. 48 8 · 가

9. 71

10. 72

11. 73

12. 74

13. 75 가

14. 76

15. 79

16. 81 1 (2 3) 3

17. 82 83 ·

18. 101 ·

66 () 가

21 8 2011 12 31 ,

< 2010.3.15 >

67 () 101 1 3 2

2 2 1 가

< 22497 ,2010.11.19 >

1 () 2010 11 26 . < >

2 6

7 ()

25 2 4 " 「 가 」 " " 「 」 " .

8

[별표 1]

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(제5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영업정지에 같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사업·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.
- 다. 품목류 제조정지에 같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제조·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.
- 라. 품목 제조정지에 같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. 다만,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(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)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.
- 마.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.

2. 과징금 기준

| 등급 | 연 간 매 출 액 (단위: 백만원) | | |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(단위: 만원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·가공업 외의 영업 |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·가공업의 영업 |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| |
| 31 | | 25000 초과 ~ 30000 이하 | 13000 초과 ~ 15000 이하 | 202 |
| 32 | | 30000 초과 ~ 35000 이하 | 15000 초과 ~ 17000 이하 | 208 |
| 33 | | 35000 초과 ~ 40000 이하 | 17000 초과 ~ 20000 이하 | 214 |
| 34 | | 40000 초과 | 20000 초과 | 220 |

| 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 | 30 이하 | | | 8 |
| 2 | 30 초과 ~ 50 이하 | 100 이하 | 100 이하 | 12 |
| 3 | 50 초과 ~ 100 이하 | 100 초과 ~ 200 이하 | 100 초과 ~ 200 이하 | 20 |
| 4 | 100 초과 ~ 150 이하 | 200 초과 ~ 310 이하 | 200 초과 ~ 300 이하 | 28 |
| 5 | 150 초과 ~ 210 이하 | 310 초과 ~ 430 이하 | 300 초과 ~ 400 이하 | 36 |
| 6 | 210 초과 ~ 270 이하 | 430 초과 ~ 560 이하 | 400 초과 ~ 500 이하 | 44 |
| 7 | 270 초과 ~ 330 이하 | 560 초과 ~ 700 이하 | 500 초과 ~ 650 이하 | 52 |
| 8 | 330 초과 ~ 400 이하 | 700 초과 ~ 860 이하 | 650 초과 ~ 800 이하 | 60 |
| 9 | 400 초과 ~ 470 이하 | 860 초과 ~ 1,040 이하 | 800 초과 ~ 950 이하 | 68 |
| 10 | 470 초과 ~ 550 이하 | 1,040 초과 ~ 1,240 이하 | 950 초과 ~ 1,100 이하 | 76 |
| 11 | 550 초과 ~ 650 이하 | 1,240 초과 ~ 1,460 이하 | 1,100 초과 ~ 1,300 이하 | 82 |
| 12 | 650 초과 ~ 750 이하 | 1,460 초과 ~ 1,710 이하 | 1,300 초과 ~ 1,500 이하 | 88 |
| 13 | 750 초과 ~ 850 이하 | 1,710 초과 ~ 2,000 이하 | 1,500 초과 ~ 1,700 이하 | 94 |
| 14 | 850 초과 ~ 1,000 이하 | 2,000 초과 ~ 2,300 이하 | 1,700 초과 ~ 2,000 이하 | 100 |
| 15 | 1,000 초과 ~ 1,200 이하 | 2,300 초과 ~ 2,600 이하 | 2,000 초과 ~ 2,300 이하 | 106 |
| 16 | 1,200 초과 ~ 1,500 이하 | 2,600 초과 ~ 3,000 이하 | 2,300 초과 ~ 2,700 이하 | 112 |
| 17 | 1,500 초과 ~ 2,000 이하 | 3,000 초과 ~ 3,400 이하 | 2,700 초과 ~ 3,100 이하 | 118 |
| 18 | 2,000 초과 ~ 2,500 이하 | 3,400 초과 ~ 3,800 이하 | 3,100 초과 ~ 3,600 이하 | 124 |
| 19 | 2,500 초과 ~ 3,000 이하 | 3,800 초과 ~ 4,300 이하 | 3,600 초과 ~ 4,100 이하 | 130 |
| 20 | 3,000 초과 ~ 4,000 이하 | 4,300 초과 ~ 4,800 이하 | 4,100 초과 ~ 4,700 이하 | 136 |
| 21 | 4,000 초과 ~ 5,000 이하 | 4,800 초과 ~ 5,400 이하 | 4,700 초과 ~ 5,300 이하 | 142 |
| 22 | 5,000 초과 ~ 6,500 이하 | 5,400 초과 ~ 6,000 이하 | 5,300 초과 ~ 6,000 이하 | 148 |
| 23 | 6,500 초과 ~ 8,000 이하 | 6,000 초과 ~ 6,700 이하 | 6,000 초과 ~ 6,700 이하 | 154 |
| 24 | 8,000 초과 ~ 10,000 이하 | 6,700 초과 ~ 7,500 이하 | 6,700 초과 ~ 7,400 이하 | 160 |
| 25 | 10,000 초과 | 7,500 초과 ~ 8,600 이하 | 7,400 초과 ~ 8,200 이하 | 166 |
| 26 | | 8,600 초과 ~ 10,000 이하 | 8,200 초과 ~ 9,000 이하 | 172 |
| 27 | | 10,000 초과 ~ 12,000 이하 | 9,000 초과 ~ 10,000 이하 | 178 |
| 28 | | 12,000 초과 ~ 15,000 이하 | 10,000 초과 ~ 11,000 이하 | 184 |
| 29 | | 15,000 초과 ~ 20,000 이하 | 11,000 초과 ~ 12,000 이하 | 190 |
| 30 | | 20,000 초과 ~ 25,000 이하 | 12,000 초과 ~ 13,000 이하 | 196 |

[별표 2] <개정 2010.8.11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7조 관련)

| 위반행위 | 근거 법령 | 과태료 금액 |
|--|-------------------|--|
| 1. 법 제3조(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|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 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|
| 2.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|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| |
| 가. 영양표시를 전부 하지 아니한 경우 | | 200만원 |
| 나.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(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), 콜레스테롤,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| | 100만원 |
| 다.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, 탄수화물, 당류,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| | 20만원 |
| 라.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| | |
| 1)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| | 50만원 |
| 2)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| | 20만원 |
| 3. 삭제 <2010.8.11> | | |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4.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| 법 제101조제3항 제1호 | 300만원 |
| 5. 법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2호 | 300만원 |
| 6. 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3호 | 200만원 |
| 7. 법 제40조제1항(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| |
| 가.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(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) | | 20만원 |
| 나.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| | 10만원 |
| 8. 법 제40조제3항(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| |
| 가.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| | |
| 1)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| | |
| 가)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| | 50만원 |
| 나)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| | 30만원 |
| 2)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| | |
| 가)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| | 30만원 |
| 나)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| | 20만원 |
| 나.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| | 100만원 |
| 9. 법 제41조제1항(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| |
| 가.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(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) | | 20만원 |

| | | |
|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나.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| | 10만원 |
| 10. 법 제41조제5항(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(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) |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| 20만원 |
| 11.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| 법 제101조제3항 제2호 | 30만원 |
| 12.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4호 | 30만원 |
| 13. 법 제4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5호 | 500만원 |
| 14.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| 법 제101조제3항 제3호 | |
| 가. 이물 발견 사실을 전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| | 300만원 |
| 나. 이물 발견 사실 일부를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물 등 증거품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| | 100만원 |
| 15. 법 제48조제9항(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6호 | 300만원 |
| 16.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| 법 제101조제3항 제4호 | 30만원 |
| 17.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7호 | 20만원 |
| 18. 법 제74조제1항(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8호 | 200만원 |
| 19.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| 100만원 |
| 가.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| | |
| 나.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 | | 200만원 |

| | | |
|--|--|--|
| <p>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</p> <p>20.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</p> <p>21.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(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가. 최근 1년 이내에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</p> <p>1) 처음 발생한 경우</p> <p>2) 2회 이상 발생한 경우</p> <p>나. 조리·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다.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</p> <p>라.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</p> <p>마.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</p> | <p>법 제101조제2항 제9호</p> <p>법 제101조제2항 제10호</p> | <p>100만원</p> <p>300만원</p> <p>500만원</p> <p>50만원</p> <p>50만원</p> <p>50만원</p> <p>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</p> |
|--|--|--|